

울산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 UNIST 산학협력관 사업화 지원기관 모집공고

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교내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및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교내 입주 중소기업창업투자사·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등을 공개모집 하오니,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장

1. 신청대상

○ 입주대상

구분	내 용
필수	울산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 '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' 의 입주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자 * 강소특구 입주 관리대상 세부 내용 [참고1] 참조
해당	①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(정의)에 의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등 ③ 기존 '울산울주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비즈니스센터' 입주기관 중 산학협력관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(투자기관 등)

2. 모집개요

○ 모집공간 규모

구분	면적	입주 대상	비고
①사무실	36㎡	상주인원 2~4명 내외 이용	- 독립공간 - 사무집기 제공 - 공유 사무용품 제공
②사무실	26㎡		
③사무실	18㎡		

* 신청기관의 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, 필요시 입주공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한 입주공간과 다른 공간에 배정될 수 있음

○ 입주기간: 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간 입주

* 입주기간 만료 후 내부 심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 연장 가능

* 기존 입주기관의 경우, 기존공간 구분 및 면적에 따라 입주 연장 신청 바람

3. 입주신청 및 절차

○ 선정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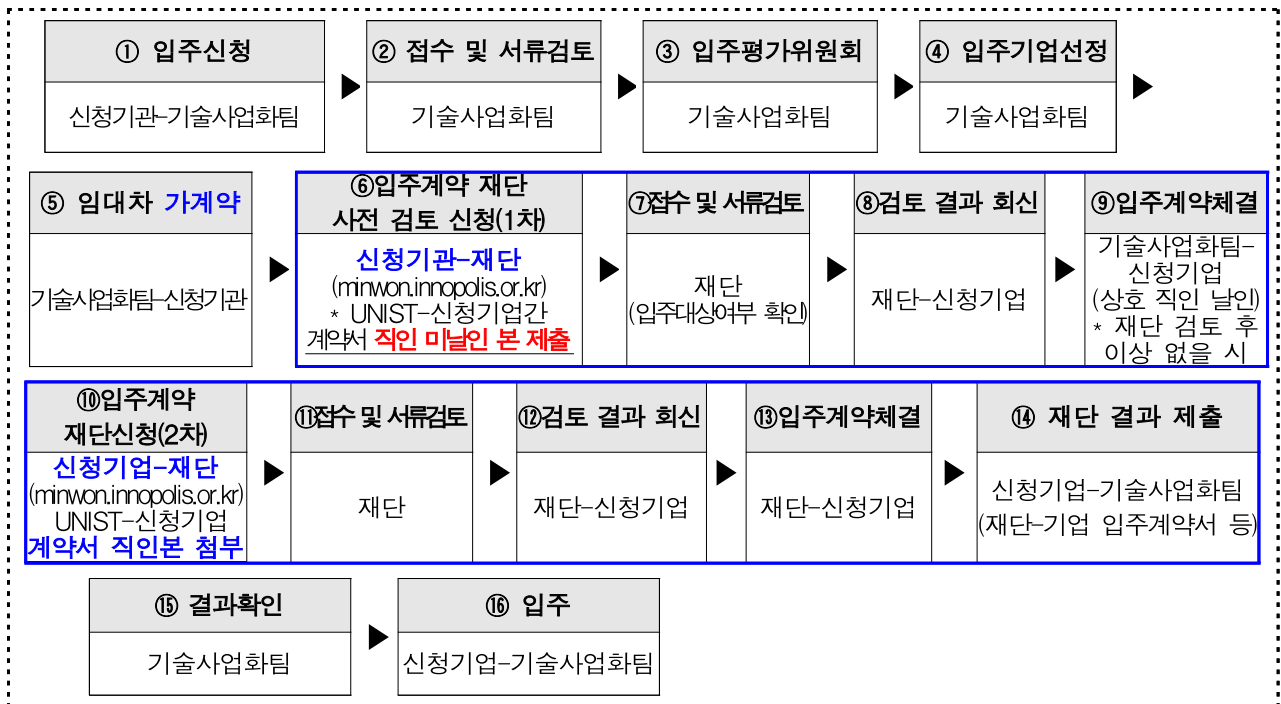
절 차	내 용	비 고
신청접수	이메일 접수	~'23.08.20
1차 심사	UNIST 입주평가위원회 (발표평가) • 평가항목: 지원기관의 전문성, 본원과의 연계성, 상주계획 등	'23.8월말
2차 심사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승인 신청 • 1차심사 통과 기관에 한해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승인 신청절차 별도 안내 (신청주체: 입주예정기관) • 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 여부 등 검토	소요기간: 2주
결과통보	평가위원회 종료 후 7일 이내	
계약체결 및 입주	• 계약체결: 입주승인 통지 이후 30일 이내 • 입 주: 입주계약서상 입주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	'23.9월중

* 선정절차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입주절차

- UNIST가 울산 울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내 입주를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 심사 절차 추가(⑥~⑭) 진행

* 관련: 특구법 제 37조, 시행령 제32조, 33조, 시행규칙 제9조



*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승인 절차 미통과 시 입주 불가

4. 입주 신청 구비서류

번호	제출서류	형식	부수	비고
1	(필수) 입주신청서	PDF	1부	* 별지 1
2	(필수) 제안서		1부	* 별지 2
3	(필수) 법인등기부등본		1부	* 1개월 이내 발급본
4	(필수) 인감증명서		1부	
5	(필수) 사업자등록증		1부	
6	(필수) 사용계획 및 이행서약서		1부	* 별지 3
7	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		1부	* 별지 4
8	(필수) 전년도 재무제표		1부	
9	(해당시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/ 창업기획자 증빙		1부	* 중소기업부 발행 등록증 또는 등록요건 충족 증빙서류
10	(해당시) 투자실적 증빙		1부	

- 접수기간: 2023.08.20.까지
-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제출 (suejeong@unist.ac.kr)
- 문 의 처

담당부서	연락처	이메일
UNIST 기술사업화팀	052-217-1361	suejeong@unist.ac.kr

5. 임대료

- 일반사무실: 관리비 포함 월 12,300원(/m²)
- * 임대료 부과기준 [참고3] 참조 / 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

6. 기타사항

- UNIST 산학협력단은 입주기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또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선납을 요구할 수도 있음
- UNIST 산학협력단에서는 입주기간에게 입주계약 체결시 필요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 요청을 할 수도 있음

강소특구 입주관리 대상

(관련: 특구법 제 37조, 시행령 제32조, 33조, 시행규칙 제9조)

-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정부출연연구기관
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」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 - 대학, 국공립연구기관
 -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 -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 -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
 - 위 사항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
-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
-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또는 그 창업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자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 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
-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·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 부대시설(편의점, 카페 등)의 경우,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기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입주하는 자로 분류하지 않으며, 체육시설이나 기숙사의 경우,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·관리를 위해 입주하는 자로 분류됨

임대료 부과기준

보증금	임대료(부가세 포함)		비고
없음	일반오피스	월 12,300원/㎡	* 유틸리티(광수도) 등 임대료 포함
	공유오피스	월 36,900원(3㎡)	* 유틸리티(광수도) 등 임대료 포함 * 전용면적(3㎡)의 경우 임의면적임

1. 원내 전화망/유선 인터넷망 사용 불가
2. 면적 단위의 소수점은 반올림 계산
3. 전용면적 기준
4. 임대료 할인
 - 1) 본원 학생기업이 입주할 경우 입주기간 동안 임대료 50% 할인
 - 2) 본원 교원기업이 입주할 경우 최초 2년 동안 임대료 50% 할인
 - 3) UNIST 기업회원이 입주할 경우 입주기간동안 임대료 20% 할인
(실험실 공간의 경우 할인 1, 2는 적용하지 않음)
5. 임대료 할증
 - 1) 입주기관이 5년을 경과하여 계속 입주할 경우 입주 연장 계약 시마다 임대료 30% 할증(최대 8년)
- 임대료 할인 기준 미적용

* 임대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
* 입주기관의 재정상태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또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선납을 요구할 수도 있음